

2023. 3. 8.(수) 실시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주요·세부 일정**

2023. 3. 8.(수) 실시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주요·세부 일정**

## 2023. 3. 8.(수) 실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로, 공직선거법은 “공선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공선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규
'22. 9. 1.까지	목	해당 조합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	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	규§3②
9. 21.	수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법§8
9. 22.까지	목	관할위원회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	임기만료일전 180일의 다음날까지	규§3②
9. 21.부터 '23. 3. 8.까지	수 수	<b>기부행위제한</b>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34·§35
12. 20.까지	화	<b>[농협]</b>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직원·상임이사·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 연합회장·중앙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b>[산림조합]</b> 해당 조합 상임이사·직원, 자회사 상근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상임임·직원, 중앙회 상임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농협정관§69①2 산림규약§8①2
'23. 1. 19.까지	목	<b>[수협]</b> 해당 조합 상임이사·감사·직원, 다른 조합 상근임·직원, 중앙회 상근임·직원, 해당 조합·중앙회의 자회사 상근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수협규정§8①1
2. 17.부터 2. 21.까지	금 화	<b>선거인명부 작성</b>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15①
2. 21.부터 2. 22.까지	화 수	<b>후보자등록 신청</b>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2. 23.	목	<b>선거기간개시일</b>		법§13
2. 25.까지	토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법§25①·§26①
2. 26.	일	<b>선거인명부 확정</b>	선거일전 10일	법§15①
2. 26.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규§18①
2. 28.까지	화	<b>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b>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법§43
3. 3.까지	금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규§25①·②
3. 6.까지	월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3. 7.까지	화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b>3. 8.</b>	<b>수</b>	<b>투·개표</b>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제8장
4. 7.까지	금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선거일후 30일까지	규§44

## 2023. 3. 8.(수) 실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세부 일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로, 공직선거법은 “공선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공선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규
'22. 9. 1.(목)	해당 조합에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	관할위원회	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	규§3②
9. 21.(수)	관할위원회에 위탁신청한 것으로 봄	위탁단체	임기만료일전 180일까지	법§8
9. 22.(목)까지	선거권자의 수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 (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임기만료일전 180일의 다음날까지	규§3②
9. 21.(수)부터 '23. 3. 8.(수)까지	기부행위제한	후보자(예정자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34·§35
	공정선거지원단 구성·운영	관할위원회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0
9. 26.(월)까지	선거관리경비 등 금액·납부기한·계좌번호 통보 (중앙회 및 위탁단체에)	중앙위원회 관할위원회	납부기한전 5일까지	규§41② 규§45③
10. 1.(토)까지	선거관리경비 납부(계도·홍보, 단속·조사, 포상금 부담금액)(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법§78①·② 규§45③
12. 20.(화)까지	<b>[농협]</b> 해당 조합·다른 조합·품목조합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직원·상임이사·상임감사(중앙회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장을 말함), 해당 조합 자회사(공동사업법인을 포함)의 상근 임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과 품목조합연합회의 회장, 중앙회의 회장, 공무원의 사직기한 <b>[산림조합]</b>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직원·자회사의 상근 임직원이나 다른 조합(「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을 말함)의 조합장·상임임원·직원 또는 중앙회의 상임임원·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농협·산림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	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농협정관§69①2 산림규약§8①2
12. 20.(화)까지	선거관리경비 납부(준비·관리경비) 통보 (위탁단체에)	관할위원회	납부기한전 5일까지	규§41②
12. 25.(일)까지	선거관리경비 납부(준비·관리경비) (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까지	법§78①
'23. 1. 19.(목)까지	<b>[수협]</b>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 및 중앙회를 말함)의 상근 임직원, 해당 조합 자회사(「상법」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함) 및 중앙회 자회사의 상근 임직원, 공무원의 사직기한 ※ 선출직 공무원 제외	수협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	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수협규정§8①1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규
1. 22.(일)까지	피선거권 증명서류등의 목록제출 (관할위원회)	위탁단체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30일까지	법§18②·2·4 규§9②
2. 6.(월)까지	위탁선거사무 대행위원회 등 결정·공고·통지(대행위원회등에)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30일까지	법§11③ 규§6③
	관할위원회가 선거사무 대행을 위하여 지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지정받은 사람	지체없이	규§6④
2. 6.(월)부터 3. 18.(토)까지	<b>투표관리관 위촉·운영</b>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규§17①
2. 11.(토)까지	예상선거인수, 선거벽보 첩부수량 및 첩부장소 통보(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10일까지	규§12③, §13⑤
2. 16.(목)까지	선거공보·선거벽보 작성수량·제출수량 및 제출장소 공고	관할위원회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5일까지	규§12④, §13⑤
	선거일을 공고한 것으로 봄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작성 개시일전일	법§14⑥
	피선거권 관련 채무기준일, 출자좌수 기준일, 사업이용실적 기준일	위탁단체	선거일 공고일 현재	농협정관§56 수협정관§55 산림조합정관§64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 투표방법에 따른 대상선거인 선정	위탁단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법§41⑤·⑥ 규§20①
	거소투표자, 순회투표자, 인터넷투표자 선정 및 투표방법 통보(선거인에게)		지체없이	규§20②
2. 17.(금)부터 2. 21.(화)까지	<b>선거인명부 작성</b>	위탁단체		법§15①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관할위원회에)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15②
	비고칸에 거소투표자, 순회투표자, 인터넷투표자로 적고 각각 작성 통보 (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규§20③
2. 20.(월) 또는 2. 21.(화)	<b>[농협]</b>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또는 자회사(공동사업법인 포함)의 비상근임원의 사직기한, 경업관계 해소기한 <b>[수협]</b> 해당 조합의 비상임 이사·비상임 감사·대의원·어촌계장(해당 조합 및 다른 조합 관할 어촌계의 계장을 말함), 다른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조합을 말함)의 비상임 임원 및 대의원, 해당 조합 자회사 및 중앙회 자회사의 비상임 임원의 사직기한, 경업관계 해소기한 <b>[산림조합]</b> 해당 조합의 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대의원 및 해당 조합 자회사의 비상임임원의 사직기한, 경업관계 해소기한	농협·수협· 산림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실제 후보자로 등록하는 날의 전일까지)	농협정관§69①·3·4 수협규정§8①·2·3 산림규약§8①·3·4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규
2. 21.(화)부터 2. 22.(수)까지	<b>후보자등록 신청(관할위원회에)</b>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자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관할위원회에)			
	기탁금 납부 (관할위원회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	후보자등록신청시	법§18②
	기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한 서류			규§10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 관한 공고·보고(상급위원회에), 통지(후보자·위탁단체)	관할위원회	지체없이	법§21
	후보자등록무효 통지 (후보자, 해당 위탁단체)	관할위원회	지체없이	법§19②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관할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법§42②
	피선거권 조사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검찰청의 장, 등록기준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관할위원회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 없이	법§18④·⑤ 규§9⑤
	후보자 사퇴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사퇴하고자 하는 때	법§20 규§11
2. 22.(수)부터 2. 25.(토)까지	<b>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b> (위탁단체에게)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법§16
	누락·오기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16③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신청 (위탁단체에)	후보자	해당 법령 또는 위탁단체의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	법§17
2. 23.(목)	<b>선거기간개시일</b>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법§13
2. 25.(토)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관할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후보자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법§25① 법§26①
2. 26.(일)	<b>선거인명부 확정</b>	위탁단체	선거일전 10일	법§15①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관할위원회에)	위탁단체	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	법§15② 규§7③
	통합선거인명부 작성	중앙위원회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았을 때	법§15③ 규§7⑤
	2개이상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이중투표방지 포함)			법§41④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규§18①
	순회·인터넷투표 일시·장소·방법 공고	관할위원회		규§21④
	순회투표관리관, 순회투표사무원, 인터넷투표관리관, 인터넷투표사무원 지정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규§21⑤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규
	선거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관할위원회) ※ 관할위원회는 통합선거인명부의 비교란에 통보 사실 기재	위탁단체	선거인명부 확정 후 발견시마다	규§8①
2. 27.(월)까지	선거벽보 첨부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에)	관할위원회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법§26②
2. 28.(화)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25② 법§43
	선거공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관할위원회에)	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 후보자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법§25⑤, §26③ 규§12⑧, §13⑤
	선거공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 허위사실 등 공고 및 허위사실 공고시 공고문사본 투표소 입구에 첨부	관할위원회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때	법§25⑤·⑥ 법§26③
	거소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거소투표자에게)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규§21①
	우편투표함 비치	관할위원회	거소투표용지 발송한 다음	공선규§80
3. 1.(수)까지	투표용지 모형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7일까지	공선법152① 공선규§75
3. 3.(금)까지	개표소 공고 (투표소에 개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포함)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규§25①·②
3. 6.(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3. 7.(화)까지	투표소 설비	관할위원회, 투표관리관	선거일 전일까지	규§18②
	개표소 설비	관할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규§25③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관할위원회에)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투표용지 발급기, 투표함 등 인계 (투표관리관에게)	관할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규§22②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관할위원회에, 선거일 투표소에서)	후보자	신고 후 언제든지	공선법§161⑤ 공선규§88①
	개표참관인 교체신고 (관할위원회에, 개표일 개표소에서)	후보자		공선법§181② 공선규§102④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었거나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의 명단 작성·통지 (투표관리관에게)	관할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공선법§154③ 공선규§78③
	순화·인터넷 투표대상자 중 투표하지 못한자의 명단 통합명부시스템 반영	관할위원회	선거일 전일까지	규§21⑥

시행일정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규
3. 8.(수)	투표[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진행, 투표록 작성)	투표관리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법§44 법§49
	거소투표 접수	관할위원회	오후 5시까지	규§21③
	우편투표함 및 순회투표함 개표소 이송	관할위원회	오후 5시 후에	공선법§176④
	투표함 등 송부 (개표소에)	투표관리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공선법§170①
	<b>개 표</b> (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작성 등)	관할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 후	법§47 법§49
	개표상황표 작성·송부 (관할위원회에)	대행위원회 등과 책임사무원	개표상황표 작성 후	규§28
	투표록, 개표록, 투표 및 개표록 송부 (관할위원회에)	대행위원회 등	개표록 작성 후	법§49②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당선인 결정상황 보고 (상급위원회에)	관할위원회	개표록을 송부 받은 때	법§49③·④ 규§29
	당선인 결정·공고·통지·보고, 당선증 교부 (통지)해당 위탁단체에, (보고)상급위원회에)	관할위원회	당선인이 결정된 때	법§56, 규§33 공선법§188⑥
	투표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관할위원회의 직근상급위원회에)	해당 위탁선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	사유발생한 날(투표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함)부터 5일 이내	법§55 규§32①
	투표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 (이의제기자, 해당 관할위원회 통지)	관할위원회의 직근상급위원회	(결정)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통지)지체없이	규§32②
4. 7.(금)까지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위탁단체에)	관할위원회	선거일후 30일까지	규§44②